

# 조달청 PQ심사기준 개정 안내

(‘25.7, 계약제도실)

## 1. 경 위

- 조달청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「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」 및 「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」 개정(’25.7.1)

## 2. 개정 주요내용

- 신인도 평가기준 개정

- 저출생 대응 가점(최대 2점) 신설

### <저출생 대응 평가항목별 주요내용>

구 분 (신인도 가점)	주요내용	참 고	
가족친화인증	가족친화인증 (+1.5점)	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* 매년 5~7월경 신청	“가족친화지원사업” 홈페이지 (www.ffsb.kr)
	선도기업 (+2점)	가족친화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우수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선정	
	예비인증 (+1점)	중소기업 대상 간소화된 심사기준 적용	
대한민국 일.생활 균형 우수기업 (+1.5점)	근로자의 일.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제도 * 매년 3~6월경 신청	“노사발전재단” 홈페이지 (www.nosa.or.kr) 내 [사업 소개] → [고용문화개선] → [대한민국 일.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] 메뉴	

※ 2025년 인증 등 신청 공고문은 별첨 참조

- 해외공사 실적 가점(최대 1점) 신설

\* 최근 5년간 해외공사실적 합계액 기준, 1억 USD 이상 +1점 / 2천만 ~ 1억 USD +0.8점 / 5백만 ~ 2천만 USD +0.6점 / 1백만 ~ 5백만 USD +0.4점

\*\*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 등록된 실적으로 평가

-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조정

\* 1~5등급(+0.6 ~ +1.0점) → +~5등급(+0.5점 ~ +1.0점)

-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감점(-2점) 삭제

## 3. 시행일 : ‘25.7.1.

\*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. 단, 저출생 대응 평가,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‘26.1.1., 해외공사 실적 평가는 ‘26.6.1. 입찰공고분부터 적용